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

◇ 개정 이유

- 지역의 자율성 및 책무성에 기반한 사업비 운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운영 및 대학과 기업의 연계 활성화 도모

◇ 주요내용

가. RISE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중 지자체 대응자금에 한하여 지역RISE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 및 책임에 따라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3조 단서)